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12868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11. 8.

판결 선고 2024. 12. 2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24. 9. 9.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내용만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이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도 발생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이호태

별지